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11	시 민			
결재일자	2013. 1. 15.	주무관	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2013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계획

2013. 1.

복 지 건 강 실
(보건정책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전 문 가 : 유 ■ (정신과전문, 변호사 등) 무 <input type="checkbox"/>
	● 음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무 <input type="checkbox"/>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홍보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유 ■ (보건복지부) 무 <input type="checkbox"/>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관 계 기 관 : 유 ■ (지방검찰청) 무 <input type="checkbox"/>
	● 민 간 단 체 : 유 ■ (마약퇴치운동본부) 무 <input type="checkbox"/>
	● 시 산 하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서울시은평병원 용인정신병원) 무 <input type="checkbox"/>

2013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계획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무료치료를 통하여 중독 상태에서 범죄 등 사회문제 야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자와 가족들에게 건강한 사회복귀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I 추진 개요

□ 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국가등의 책임) 및 제40조(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23845, 2012.06.07.)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복지건강국장 방침 2005.07.23.)

□ 사업 흐름도



II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단위: 명)

연도	치료인원	자의입원	검찰의뢰	위원회 개최횟수	진료비
2010	13	2	11	11회	48,000,000원
2011	6	2	4	8회	25,358,940원
2012	7	0	7	6회	21,601,280원

최근 3년간 유해약물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단위: 명)

연도	치료인원	자의입원	검찰의뢰	심의횟수	진료비
2010	12	11	1	12회	10,000,000원
2011	7	7	0	7회	6,034,560원
2012	6	6	0	6회	6,181,080원

III

추진 방향

치료보호

- 서울시 치료보호기관인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용인정신병원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유해약물중독자 치료보호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준하여 시행
- 서울시민(주민등록상)이 타 지역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서울시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에서 치료보호 결정

홍보

- 서울시 및 자치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대상 홍보 실시
- 지방검찰청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신보건센터 등 관련 단체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를 적극적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홍보 실시
- 120 다산콜센터, 보건복지부 홍보포스터 등 활용하여 지속적인 안내
- 자치구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치료보호, 출소자 현황 알림(☞ 붙임 1)

사후관리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송천재활센터와 연계
-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재발방지에 노력

IV

세부추진계획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 대상자
 - 검사가 마약류 투약사범 중 치료보호 의뢰한 자
 - ☞ 붙임 2. 검사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 중독자 등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보호를 위하여 입원신청한 자
 - ※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포함함
- 추진방법
 - 서울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입원치료(최대 1년)
 - 치료보호기관의 중독자 치료결과 보고 및 치료비 지급 청구에 따라 치료비 전액 지급(서울시 → 치료보호기관)

- 타 지역 치료보호기관에서 서울시민(주민등록상)이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서울시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 결정

○ **치료보호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용인정신병원**

- 치료보호기관 전국 현황

권역별	시·도	기관명	비고	
수도권 (5개)	서울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경기		의정부의료원	
			용인정신병원	
			계요병원	
충청·강원권 (2개)	충남	국립공주병원		
	강원	국립춘천병원		
경상·부산권 (2개)	경남	국립부곡병원		
	울산	큰빛병원		
전라·제주권 (2개)	광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전남	국립나주병원		
합계		11개 기관		

○ **예산 : 42,000천원(국비50%, 시비50%)**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 편리성 증대,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의료및구료비(100-307-01)

○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 **대상자**

- 검사가 중독자 또는 중독자로 의심되어 치료보호 의뢰한 자
- 중독자 등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보호를 위하여 입원신청한 자

※ 유해약물 : 유해약물은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기타 중독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포함함

☞ 붙임 3. 유해약물중독자 치료보호 관련서식

○ **방법**

- 서울시 유해약물 치료보호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입원 치료(최대 1년)
- 중독자 치료결과 보고 및 치료비 지급 청구에 따라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급(서울시 → 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용인정신병원**

○ **예산 : 10,00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 편리성 증대,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유해약물안전관리, 의료및구료비(100-307-01)

사후관리

○ **대상자**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중 치료보호를 마친 자
- 중독자 등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 자

○ **관리기관 : 송천재활센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 붙임 4. 송천재활센터 소개 자료

○ **방법**

- 치료보호 기간 종료 후 퇴원시 안내문 배부
- 중독 관련 문의 시 전화번호(송천재활센터, 02-2679-0436) 안내

붙임 : 1. 최근 3년 자치구 마약류 유해약물 치료보호, 출소자 현황 1부.
2. 검사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1부.
3. 유해약물중독자 치료보호 관련서식 1부.
4. 송천재활센터 소개 자료 1부. 끝.